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29.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11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해 책무사항 등 기타조항을 정비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의 책무"로 변경(안 제4조)
- 에너지 절약용품 지원사항 신설(안 제16조2항)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개정조례안은

-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해 책무사항 등 기타조항을 정비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구민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경우 에너지 절약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의 책무의 주체를 구청장에서 구로 개정하여 안 제2조의 기본이념의 주체와 통일 및 장(章)과 조문제목의 정비로 조례를 체계화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204 번 호

발의연월일: 2023.8. .

발 의 자: 유승용 이예찬 양송이

· 신흥식 의원(4인)

1. 제안이유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해 책무사항 등 기타조항을 정비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의 책무"로 변경(안 제4조)

나. 에너지 절약용품 지원사항 신설(안 제16조2항)

다.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8. 10.~ 8. 1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효율화"를 "합리화"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을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제4조의 제목 "(구청장의 책무)"를 "(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는"으로, "효율화"를 "합리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구청장은"을 각각 "구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효율화"를 "합리화"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의 인증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효율화"를 "합리화"로 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및 위원회설치 및 운

영"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에너지계획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 운영

제8조의 제목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회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선입한다"를 "선임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에너지위원회 기능)"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제10조제1항 중 "효율화"를 "합리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보수시" 를 "개·보수 시"로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에너지시책

제12조의 제목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을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개보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보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구입시"를 "구입 시"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의 제목 "(세제·재정 지원 등)"을 "(세제·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효율화"를 각각 "합리화"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을 "(에너지 교육,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효율화, 신재생"을 "합리화, 신·재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에너지관련 교육"을 "에너지 관련 교육"으로, "에너지관련 도서"를 "에너지 관련 도서"로, "에너지관련 홍보문구"를 "에너지 관련 홍보문구"로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약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제2조(기본이념) ①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2 <u>합리화</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제3조(정의) ①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2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	
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	
는 단체 중 <u>「비영리민간단체</u>	「비영리민간단체
<u>지원법」</u> 에 따른 비영리민간	<u>지원법」</u>
단체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	
조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u>	<u>등록한</u>

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 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 위계층을 말한다.

② (생략)

<신 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u>효율화</u>,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 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u>구청장은</u>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있다.
- ③ <u>구청장은</u>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 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

•
5
<u>宁</u>
급권자
<u>.</u>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_
· · · · ·
권리·책무 등
제4조 <u>(구의 책무)</u> ① <u>구는</u>
<u>합리화</u> -
② 구는
<u> </u>
③ <u>구는</u>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를 높이고 신 ·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에 저 너지를 합리적 · 효율적으로 사 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 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에 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 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야 하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및 위원회설치 및 운영

<신 설>

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 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이

② (현행과 같음)
세6조(구민의 책무) ① <u>서울특별</u>
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u>한다)</u>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
지의 인증제품
②
합리화
<u>.</u>
<삭 제>

왕기 의

제3장 에너지계획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 |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 획)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 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 제8조<u>(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u> 영)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로 한다.
 -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서 선입한다.
 - 2. (생략)
 - ③ ~ ⑤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u>제3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u> <u>효율화</u>

<신 설>

제10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u>효율화</u>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u>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회의
<u>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u>선임한다</u>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 <u>(에너지위원회 기능)</u> (현행
과 같음)
<u><삭 제></u>
<u>제5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u>
합리화
제10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
리화) ①
<u>합리화</u>

- ② · ③ (생 략)
- ④ 구청장은 건축물 <u>개·보수시</u>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 다.

<신 설>

-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
 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
 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1. (생략)
 -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사용
 - 3. 4. (생략)
 - 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u>구입시</u>, 경차 또는 <u>「환경친화적자동</u>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개·보수 시</u>
	· 제6장 에너지시책
-1 <u>1</u>	
세	12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1. (현행과 같음)
	2
	<u>개·보수 시 「녹색제품</u>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3. • 4. (현행과 같음)
	5 <u>구입 시</u> -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

- 6. 7. (생략)
- ② (생략)

<신 설>

제4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신 설>

- 제14조<u>(세제·재정 지원 등)</u> ①· ② (생 략)
 - ③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를 따른다. 다만, 태양광 발 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u>서울시</u> 공고를 준용한다.

④ (생 략)

제15조(구민 등과 협력강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u>효율화</u>,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
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u>촉진</u>
<u><삭 제></u>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 <u>(세제·재정지원 등)</u>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u>
서울특별시
<u>-</u>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구민 등과 협력강화) ① -
합리화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구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신·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생략)
- 2. 에너지 절약 및 <u>효율화</u>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3. (생략)

제16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 상) 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u>효율화, 신재생</u>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 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u>에너지관</u> 런 교육, 홍보활동 등을 위해 예

②
1. (현행과 같음)
2 <u>합리화</u>
3. (현행과 같음)
제16조(에너지 교육, 홍보 등) ①
<u>합리화, 신·재생</u>
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
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약용품을 예산의 범위
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u>에너지 관</u>
<u>련 교육</u>

산의 범위 내에서 <u>에너지관련</u> 도서,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있으며, 또한 <u>에너지관련 홍보문구</u>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장소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u>에</u>	너지	<u>관련</u>
<u>도서</u>				
	에너	기	관련	홍보
문구				
<u><삭 제></u>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 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 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 례」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